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9 선고 2021가단527590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2. 7. 19.

판 결 선 고 2022. 8. 9.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13 지분에 관하여 2021. 2. 5. 체결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12,877,692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877,6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C의 처분행위 등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21. 2. 5.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인 피고와 자녀들인 E, F, C, G, H은 2021. 2.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8. 피고 명의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피고는 2021. 8. 31. I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1억 4,710만 원에 매도하였고, 202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망인은 중소기업은행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9. 4. 16. 채권최고액 4,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② 2010. 7. 12. 채권최고액 6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③ 2011. 7. 1. 채권최고액 2,4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고, 망인의 사망 당시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원금의 합계는 5,900만 원이었다.

다. C의 무자력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 당시 C의 적극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2/13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해운대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1)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참조),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가 무자력의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귀속시킨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C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역시 추정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실질 소유자인 자신이 망인에게 명의신탁해두었다가 명의수탁자의 반환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를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는 C가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선의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취소의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수익자로부터 전득자로 이전되어 그 등기까지 경로되었다면 후일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수익자가 전득자로부터 목적물의 소유권을 회복하여 이를 다시 채권자에게 이전하여 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써 채권자에 대한 목적물의 원상회복의무는 법률상 이행불능의 상태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인 2021. 9. 8. 1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원고는 가액배상을 구할 수 있다.

(2)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위 잔액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 중 부산지방법원 2016가단3269 판결에 기한 채무는 2002. 12. 26.경 당시 채권자인 주식회사 J으로부터 면제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을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피고는,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외에 취득세, 장례비, 묘지구입비, 병원비, 집수리비 등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① 을 제2호증의 10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K로부터 1,700만 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② 증여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물반환에 갈음하여 그 목적물 가액의 배상을 명함에 있어서는 수익자에게 부과된 증여세액과 취득세액을 공제하여 가액배상액을 산정할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③ 망인의 사후에 발생한 장례비, 묘지구입비를 망인의 채무라고 할 수 없다.

④ 을 제2호증의 8, 9, 12 내지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병원비 대부분은 망인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제가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망인 사망 당시의 채무로 볼 수

없고, 병원비 중 일부는 망인의 사망 후에 결제가 이루어졌으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나 C가 그 병원비를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를 C의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더욱이 배우자나 자녀의 망인에 대한 부양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를 망인의 채무로 보기도 어렵다.

⑤ 을 제2호증의 11의 기재만으로는 망인이 사망 전에 집수리비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시가인 1억 4,710만 원에서 망인의 사망 당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인 5,900만 원을 뺀 8,810만 원 중 C의 상속지분인 2/13에 해당하는 금액은 13,553,846원(원 미만 버림)이고, 이는 원고의 채권액보다 적으므로, 위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13,943,303원 중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인 12,877,692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며,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12,877,692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춘수

별지